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69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법률안별 검토	8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	8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	10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27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4조)	3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경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함.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정부는 ‘경제형벌개선TF’를 발족(경제부총리 주재, 2022.7.13.)하여 기업 투자와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잉 형벌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행정제재 등 형벌 외 수단으로 입법목적의 달성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① 非범죄화(형벌폐지, 과태료 전환), ② 규제합리화(先행정제재-後형벌, 형량조정)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서,

‘경제형벌개선TF’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TF 참여 부처들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을 토대로 단순 신고·보고·자료제출 등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형벌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경제 형벌을 조정·완화하려는 것임.

□ 형벌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법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형사상 책임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의 규율목적과 위반행위의 유형 및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

법률	대상	기존	개정유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 규모 유통 업 자 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 장 지 배 적 지 위 의 남용금지 위반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일부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의결권 행사 제한 의무 위반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조정)
	지주회사 설립제한 위반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보고·자료제출명령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1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전환)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미·허위 보고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전환)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불응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주요 의무사항 중 일부 위반행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형벌규정 삭제 (선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

2. 개별법률 검토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안 제1조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 ----- ----- -----.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¹⁾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①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②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은 배타적 거래 강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방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²⁾과 과징금 부과처분³⁾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려는 내용으로⁴⁾, 경제활동과 관련된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조치의 완료로 별도의 처벌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형벌규정의 법 위반 억지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2조)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일부에 대한 형벌조항 삭제

- 개정안은 제5조제1항 중 제3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호(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호 전단(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u> (이하 생략)	제124조(벌칙) ① ----- ----- ----- -----. <u>1.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남용행위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u> (이하 생략)

- 현행 제5조제1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제124조제1항제1호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배제적 남용행위’⁵⁾와 ‘착취적 남용행위’⁶⁾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후단은 ‘착취적 남용행위’,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전단은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으로 구분함.

< 현행과 개정안 형벌규정 비교 >

제5조 제1항	내용	강학상 유형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착취적 남용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현행과 같음
제2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배제적 남용행위		형벌 삭제
제4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착취적 남용행위		현행과 같음

5)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행위(exclusionary practices)

6) 배제행위가 없더라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출고를 조절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실현하는 행위(exploitative practices)

□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더라도, 현행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⁷⁾를 명하거나 과징금⁸⁾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⁹⁾, 개정안과 같이 ‘배제적 남용행위’에 관한 형벌을 삭제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함.

□ 다만, ‘배제적 남용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전형¹⁰⁾으로서 경쟁제한성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당국들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주로 배제남용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규제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착취적 남용행위’는 ‘배제적 남용행위’와는 달리 주요 경쟁당국에서 법집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¹⁾는 점을 고려할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김준하·김형석, 2022,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박영사, p.259

필요가 있음.

- 또한, 독과점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이 가지는 억지력의 측면과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법 위반행위 자체의 예방을 위한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의결권 행사 제한 의무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한 형량 조정

□ 개정안은 제 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벌칙) ① ----- ----- ----- -----.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3. 제23조----- ----- --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 ----- -----.
<신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현행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업결합 제한 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¹²⁾, 현행 제15조는 주식처분명령을 받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

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¹³⁾, 현행 제124조제1항제3호는 제15조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과 개정안 형벌규정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주식 의결권 행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은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에 대한 형량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량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제124조제1항제3호¹⁴⁾는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

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과 같이 의결권 행사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현행 제124조제1항제3호의 적용 대상 조문 중 제39조15)는 주식처분명령(시정조치)의 이행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5조와 조문체계가 동일한데 이 중 제15조 위반에 대해서만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은 균형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형벌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15 위반) 위법한 기업결합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위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행과 같음
(§25 위반)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39 위반) 상호출자·순환출자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지주회사 설립제한 규정에 대한 형벌 조항 삭제

□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현행의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벌칙) ① ----- ----- ----- -----.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삭 제>

□ 현행 제19조¹⁶⁾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규정하며, 현행 제124조제1항제5호는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 현행과 개정안 형벌규정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채무보증 미해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형벌 삭제

□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면서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설립절차 중지 명령, 채무보증의 취소명령 등 직접적인 시정조치¹⁷⁾를 통해 실효적인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며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보증 미해소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채무보증제한제도는 상호채무보증에 의해 재무구조가 불건전하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채무보증의 교환으로 인해 계열사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따른 동반부실 위험을 축소하며, 금융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의 여신집중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여신이용이 제약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서¹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제도이므로 채무보증해소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한편, 현행 제24조¹⁹⁾ 및 제125조제1항제8호²⁰⁾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규 채무보증 행위(법 24조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기존 채무보증 미해소(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됨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

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2021, p.82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4) 보고·자료제출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벌조항 삭제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의 사업자등에 대한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형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 ----- -----.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현행 제81조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호²¹⁾와 제6항²²⁾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함. 현행 제125조제6호는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을 미이행하거나 허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과 개정안 형벌규정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자료·물건 제출 명령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 삭제
자료·물건 제출 명령 허위이행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미이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²³⁾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현장조사 등에서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물건 제출 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대한 허위이행에 관하여는 현행의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대한 미이행과 허위이행은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모두 고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7년 4월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²⁴⁾에 따르면 자료·물건 제출 명령 미이행 및 허위이행에 관한 과태료(1억원 이하)의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환은 당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로서 미이행과 허위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통일적으로 부과하였음.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대한 미이행과 허위이행에 관한 형벌여부를 구분하는 경우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이를 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대한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 허위이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²⁵⁾도 있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3호) 개정이유 중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범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려는 것임.

25)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게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것에 대하여 ○○○○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당좌대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내부거래조사표에 기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허위자료 제출이라고 판단(2002조기 1549 의결2003-009)한 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미이행과 허위이행에 관한 형벌 부과여부를 구분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에 있어 피심인은 형벌을 회피하는 등의 동기로 당해 행위가 허위이행이 아닌 미이행에 해당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발생함.

(5)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행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위 행위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제126조(벌칙)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제130조(과태료) ① ----- -----

현행	개정안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u>1의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 현행과 개정안 제재규정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미이행·허위이행	1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 미이행·허위이행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보고의무 미이행·허위이행		

□ 개정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 행위(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보고의무)는 그 성격이 행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보다 실효적일 수 있음.

○ 또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

회사 설립제한(제19조), 상호출자 금지(제21조), 순환출자 금지(제22조) 등에 대한 형벌은 계속 유지되므로 행정상 신고의무와 같은 절차적 위반행위가 실체적 위반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조)

(1)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 형벌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현행법은 제18조제2항(청약철회 대금환급) 위반행위에 대해 다단계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후원방문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 ----- --. ----- ----- -----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66조(과태료) ① (생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	② ----- ----- -----

현행	개정안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 6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 <u>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u> <u>자</u>

□ 현행법 제18조제2항²⁶⁾은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회를 한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재화 등 청약철회 대금을 환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제1항제3호²⁷⁾에서는 위반 시 형벌(다단계판매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는 직하위 판매원 외 차하위 하위 판매원 등의 실적
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직하위 판매원
의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후원수당의 총 지급 한도, 벌칙 등에 있어서 다르게 규제함.

26)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의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경우 경제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다단계판매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²⁸⁾과 같은 성격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인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최근 3년간 실제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²⁹⁾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28)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29) 최근 3년간 청약철회 대금 환급 위반 관련 제재현황(제18조제2항 관련)

연도		'20	'21	'22
항목				
형사 고발건수		0	0	0
기타 처분건수	과징금	0	0	0
	시정명령	0	0	0
	경고	0	0	0

※ 지자체 조치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호에 관한 법률」은 형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철회 대금 환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사 규제 내역 >

구분	현행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시정조치	○	○	×	○
과태료	×	○ (1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 이하)	×
형벌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더욱이 현행법에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형벌조항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37조제1항³⁰⁾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으로 ①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②채무지급보증계약, ③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의 체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 시 동조 제3항³¹⁾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³²⁾에 따른 보상이 가능함.

30)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1)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2)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불응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삭제

□ 현행법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되, ‘허위이행’ 부분은 현행 형벌조항을 유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 ----- ----- -----.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현행법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³⁾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33) 정보공개는 동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 개업 시 등록한 사항, 그 밖에

□ 그러나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는 단순 행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벌금,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에게 과도한 제약이라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의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미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 시정조치 등의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려는 것임.

○ 다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법 위반행위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형벌조항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미이행의 경우 최근 3년 내 실제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없고³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형벌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49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34) 최근 3년간 자료제출 의무 위반 관련 제재현황(제13조제7항 관련)

연도		'20	'21	'22
항목				
형사 고발건수		0	0	0
기타 처분건수	과징금	0	0	0
	시정명령*	6	2	0
	경고	0	0	0

* 모두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분임

※ 지자체 조치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³⁵⁾의 시정조치명령을 통해 자료제출의 이행이 가능하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형벌(다단계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³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현행법상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로도 실효적인 의무행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임.

35)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6)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4조)

□ 개정안은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제7조),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 의무(제9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의무(제13조의2제1항·제2항·제3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 -----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제30조제1항은 하도급거래와 직접 관련³⁷⁾이 있는 모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현행 제30조제1항 벌금형(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부과대상 >

규정 조항	내용
§3①~④,⑨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3의4	부당특약 금지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6	선급금의 지급
§7	내국신용장의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9	검사결과 통지
§10	부당반품의 금지
§11	감액금지
§12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2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3의2①~③	공사대금 지급보증
§1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16①,③,④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6의2⑩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1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개정안은 일부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 방지 등의 시정조치³⁸⁾와 과징금 부과처분³⁹⁾ 등 행정조치를 먼저

37) 하도급거래와 간접적인 관련이 이는 보복조치 금지 의무 위반(제19조 위반)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의무 위반(제18조 위반), 탈법행위 금지 의무 위반(제20조 위반)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내국 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제7조⁴⁰⁾).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제1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등은 대금지급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 위반이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제13조⁴¹⁾) 위반으로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며,

-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 의무(제9조⁴²⁾)의 경우 이를 미준수하는

-
- 38)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9)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40)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41)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검사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제재가 가능함.

□ 다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내국신용장 개설·구매확인서 발급,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의 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연쇄부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115

42)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